공 개

의안번호	제 7 호
의 결 연 월 일	2022. 1. 26. (제 2 차)

의결사항

(경북)오성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고 승 범
제출 연월일	2022. 1. 26.

1. 의결주문

(경북)오성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북)오성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32억원 초과 취급한 행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위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운영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경북)오성저축은행에게 과징금 3억 81백만원, 과태료 24백만원을 부과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이사 ○○○ 및 차장 ◇◇◇에게 각각 과태료 2.4백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 붙임 >

다. 관계부서 협의

○ 2021년 제29차 제재심의위원회(2021.8.26.) 심의필

○ 2022년 제2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2.1.20.) 심의필

< 별지 >

(경북)오성저축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징금 3억 81백만원 및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2. 조치사유 가, 나, 다항에 해당)**

□ **직원에 대한 조치 : 업무이사 ○○○ 및 차장 ◇◇◇에 대해 각각 과태료 2.4백만원 부과(2. 조치사유 나항에 해당)**

2. 조치사유

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및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경북)오성저축은행은,

2020.12.14. 개인차주 △△△*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2건, 40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32억원(2020.6월말 자기자본 223억 20백만원의 14.3%) 초과하였음(2021.3.18. 한도초과상태 해소)

* 개인사업자(임대업)이면서 ㈜▽▽백화점(13.6%) 및 ◎◎저축은행(30.3%)의 최대주주

** △△△는 위 차입금으로 하나은행에 본인 명의의 정기예금 가입(40억원) 후 본인의 자녀 및 사위가 예금담보대출(40억원, ㈜▽▽백화점 주식 매입에 사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예금을 담보로 제공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명세(2021.3.10. 현재)

(단위: 억원)

차주명	자금용도	취급일	대출 금액	1차 송금처	대출 한도	한도 초과액
△△△	시설자금 (상가증축)	2020.12.14.	23	△△△ 명의 ▷▷투자증권 개인계좌	8	32
	운영자금 (임대보증금 반환)		17			
계			40		8	32

<관련법규>

1.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2.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위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업무로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예·적금의 수입, 대출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따른 업무

(경북)오성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 ◇◇◇은 2014.8.26. ~ 검사착수일(2021.3.10.) 현재까지 여신 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으며

(경북)오성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 ◇◇◇으로 하여금 여신 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성명	직위	담당 업무 기간	겸직 업무
○○○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2014.8.26. ~ 2016.10.16., 2020.8.1. ~ 현재	여신 영업 및 관리업무
◇◇◇	前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2016.10.17. ~ 2020.7.31.	

<관련법규>

1.「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9조

2.「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제1항

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운영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경북)오성저축은행은,

검사착수일(2021.3.10.) 현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수익성 원칙**에 의거한 평가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8.1. ~ 2021.3.19.(검사종료일) 기간 중 상호저축은행의 목표이익률과 연동된 상여금*** 및 여신 영업·관리 수당 등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보수를 지급하였음

* 검사착수일 현재 업무이사 ○○○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적용되는 '근무성적평정표'의 평정요소 중 상호저축은행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1~4점 배점)하는 항목이 존재

*** 매년 사업계획서에 따른 목표이익률 달성시, 기본급 x 300% 이내에서 지급

<관련법규>

1.「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 붙임 >

관 계 법 규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신용공여"란 급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본다.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계열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이하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 ⑧ (생략)

제38조의2(과징금의 부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동일 계열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상호저축은행
   가. 상호저축은행이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18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나. ~ 다. (생략)
2. ~ 3. (생략)

제3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舊「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21.7.27. 대통령령31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그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인(제2호에 따른 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100억원

1의2. 법인이 아닌 사업자(제2호에 따른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50억원
2. 지역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공공적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 사업에 직접 드는 금액
3.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8억원
② ~ ⑥ (생략)

제3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1.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
 가. 위반한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된 경우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나.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② ~ ④ (생략)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64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납부방법 등)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과 시행령 제30조의3제4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별표9>와 같다.

<별표 9>

상호저축은행의 과징금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30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 칙

가. "자기자본"이라 함은 법 제2조 제4호의 자기자본을 말한다.
나. "과징금 부과기준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이라 한다)에서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날로 한다.
다. 과징금을 부과 받을 자(이하 "과징금부과대상자"라 한다)의 "재무건전성 및 재산상태"는 기준일의 최직근 결산일의 재무상태로 한다.
라. 과징금부과대상자의 재무건전성 및 재산상태에 대한 판단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부과대상자의 별도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명 내역을 적용할 수 있다.
 (1) 과징금부과대상자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2 <별표1>에 따라 산출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2) ~ (3) (생략)
마. 과징금부과대상자의 재무건전성 및 재산상태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소명에 대한 책임은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있고, 해당 자료 제출이나 소명이 없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과징금 감경 및 면제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감독기관의 인지'라 함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조의 종합검사, 부문검사, 현장검사, 서면검사, 상시 감시, 및 제보, 언론 보도 등으로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이 과징금부과대상자의 법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 등을 파악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단, 검사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인지시점은 검사명령의 사전통지를 한날로 간주하고 긴급한 소요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검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착수일로 간주한다.

사. "위반행위의 시점"은 법제38조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의 경우 한도초과여신의 상환을 의미하고 법 제38조의2 제1호 나목 및 제3호의 경우 위반여신의 상환을 의미한다.

아. "부당이득"은 법 제38조의2 각 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3. 과징금 산정방식

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나. 기준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법정부과한도액을 산정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법정부과한도액에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라.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가중·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조정한다.

마. 그 밖에 과징금부과대상자의 특수한 사정,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부과 과징금의 결정을 위한 요소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기준금액과 법정부과한도액의 산정

가. 기준금액은 법정부과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법 제38조의2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위반금액(하나의 신용공여가 여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과징금 산정액이 가장 큰 것을 적용한다)을 말하며,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위반금액의 최고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과징금이 부과된 이후 위반금액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이전의 위반금액에 추가 확인된 위반금액을 합산하여 기준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부과된 과징금은 최종 산정된 과징금에서 차감한다.

다. 법정부과한도액은 기준금액에 법 제38조의2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각기 정한 부과비율(이하 "법정 최고 부과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기본과징금의 산정

법정부과한도액에 아래표의 단계별 기본부과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영 제30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적용을 받는 위반행위의 경우, 법정부과한도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적용한다.

구 분	법정부과한도액	기본부과율
1단계	2억원 이하	× 7/10
2단계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20
3단계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7/40
4단계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 7/80
5단계	2천억원 초과	× 7/160

<기본과징금 산정방식>

법정부과한도액	기본과징금
2억원 이하	법정부과한도액×1단계 기본부과율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억원×1단계 기본부과율+(법정부과한도액−2억원)×2단계 기본부과율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억원×1단계 기본부과율+18억원×2단계 기본부과율+(법정부과한도액−20억원)×3단계 기본부과율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2억원×1단계 기본부과율+18억원×2단계 기본부과율+180억원× 3단계 기본부과율+(법정부과한도액−200억원)×4단계 기본부과율
2천억원 초과	2억원×1단계 기본부과율+18억원×2단계 기본부과율+180억원× 3단계 기본부과율+1,800억원×4단계 기본부과율+(법정부과 한도액−2천억원)×5단계 기본부과율

6. 기본과징금의 조정

가. 일반원칙

(1) 기본과징금의 조정은 기본과징금에 각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을 차감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조정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75을 초과할 수 없다.
(3) 조정 후 과징금은 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법정부과한도액 기타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중 사유 및 비율

(1) 위반행위의 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가중하되, 그 금액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가중금액 = 일평균 위반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 ×
(위반일수-1) × 0.1%* 또는 0.2%**

* 364일이내의 위반일수에 적용
** 364일을 초과하는 위반의 경우로서 364일 초과일수에 적용

(2) 최근 3년이내에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 1회당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을 가중하되, 그 가중액의 합은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또는 다른 이득을 취하는 경우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금융시장의 신용질서가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형식적으로는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금융시장의 신용질서 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발생원인 등을 고려할 때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법 제38조의2 제1호 가목, 제2호에 따른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시정범위	시정시점	감경기준
전부시정 (한도초과 전액 상환)	감독기관 인지전	기본과징금의 50% 감경
	감독기관 인지후	기본과징금의 30% 감경
일부시정 (한도초과액의 50% 이상 상환)	감독기관 인지전	기본과징금의 30% 감경
	감독기관 인지후	기본과징금의 15% 감경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최근 3년이내에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0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1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법 제38조의2 제1호 나목에 따라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에 과징금이 병과 될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다.

- 대주주 등이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전부 시정한 경우 기본과징금의 75%를 감경할 수 있다
- 대주주 등이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이의 50%이상을 시정한 경우 기본과징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

(6) 법 제38조의2 제3호 위반에 따른 기본과징금의 경우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부 시정한 경우 100분의 25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통상의 업무 수행 중 과실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복수의 외부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100분의 10 이내에서 기본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7.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 부과가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 사유 조정 후 과징금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단, 법제38조의2 제3호의 과징금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유예조치포함) 또는 경영개선요구(유예조치포함) 조치를 받은 경우, 단 기준일 현재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액하지 아니 한다.

(2)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이 하락하여 경영개선권고 또는 요구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주주 등의 증자 등 자구노력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3) 기타 위 (1) 내지 (2)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과징금부과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법제38조의2 제3호의 과징금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 또는 경영개선명령유예의 조치를 받은 경우, 단 기준일 현재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지 아니 한다.

(2)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이 현저히 하락하여 경영개선명령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주주 등의 증자 등 자구노력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3)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로 과징금부과대상자의 과징금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법 제38조의2 제3호 과징금의 경우 대주주 등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 과징금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기준일 현재 대주주 등의 채무상태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어 대주주 등이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라. 기 타

(1) 위반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자 등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벌금·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란 판결의 확정 및 과징금 및 과태료의 납부완료를 의미한다.

(3) 단순오류, 경미한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로서 상호저축은행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매우 경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조정 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할 수 있다.

8.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납에 관한 사항

가. ~ 다. (생략)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 ⑤ (생략)

⑥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생략)

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로 본다.

제29조(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해당 금융회사의 겸영(兼營)업무
4.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등의 업무(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소속 자회사등의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43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6. 제25조제6항(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를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한 자
8. ~ 10.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겸직 금지 등) ① 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 3. (생략)
4.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② (생략)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모. 법 제25조제6항(법 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6호	3,000
오.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7호	3,000 다만,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에는 600만원으로 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생략)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삭 제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3) 삭 제

(4) 삭 제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8) 삭 제

(9)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생략)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중소금융과	저축은행검사국
연 락 처	02-2100-2991	02-3145-7385